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□ **변경 사유** :

- (1) F클래스 가입자격 정정
- (2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(3)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분류기준 변경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4. 3. 16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<b>2014.3.16. :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 조건부 매수 추가</b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3.9.30. 기준	<b>2014.2.28. 기준</b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F클래스(펀드코드 : AM522)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	F클래스(펀드코드 : AM522): <b>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b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	<b>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펀드 : 주식모 50% 미만, 중기채권모 80%이하, 중장기채권모 : 80% 이하</b> <b>재형칭기스칸채권혼합 삭제</b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
	-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		<b>8) 환매조건부 매수</b>
	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관련 제한	<b>삭 제</b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-	<b>&lt;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&gt; 변경</b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F클래스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	F클래스 : <u>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<b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클래스 추가에 따른 보수 및 비용 기재</b>